

#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41
----------	-----

제출연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19.3월에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탈북학생 지원 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탈북학생 방학학교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탈북학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탈북학생 지원의 효과성 향상
  - 탈북학생 지원 사업 중 정책적 기능이 적고 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을 도입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 ※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임을 고려할 때 일반수련업체에 용역 계약 시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청 직접 수행 시에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탈북학생 방학학교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탈북학생과 교원이 함께하는 3박4일 간 1:1 학습멘토링 캠프 (연2회)

라. 민간위탁 기간 : 2019.11.1. ~ 2021.10.31. [2년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제한입찰

바. 예산 규모 : 22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첨1) 탈북학생 방학학교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주시민생활교육과-7066,2019.5.21.호)

나.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별첨2)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첨3)

다. 탈북학생 방학학교 성과보고서 (별첨 4)

## 【별첨 1】

# 탈북학생 방학학교 민간위탁 추진 계획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탈북학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탈북학생 지원의 효과성 향상
- 탈북학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을 도입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임을 고려할 때, 일반수련업체와 용역계약 시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청 직접 수행 시에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

### □ 민간위탁 추진 내용

- 대상사업: 우리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탈북학생 지원사업 중 민간 위탁으로 실시함이 효율적인 사업
  - 탈북학생 방학학교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탈북학생과 교원이 함께하는 3박4일 1:1 학습멘토링 캠프 (연2회)
- 운영방법: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 \* 탈북학생 교육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남북한 이해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 위탁기간: 2019.11.1. ~ 2021.10.31. [2년간]
  - ※ 겨울방학에 방학학교가 실시되므로 사전 준비 작업 등을 위해 11월부터 실시
  - ※ 위탁기간 중 방학학교 4회 이상 실시

### □ 그간의 추진 경과

- (2009~2017,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방학학교 실시
  - 공모 선정을 통하여 주관 단체에서 실시
- (2017.3.23.,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2017.12, 행정관리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시행

- (2018,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학학교 직접 수행
  - 일반적인 수련업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청 직접 수행하기에는 행정 비효율 발생
- (2019. 3.28.,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지원 조례」 제정
  -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지원 조례」 제정 주요내용 발췌)

□ 향후 추진 계획

- (2019.6월)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안건 상정(제287회 정례회)
  -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 적정성 등
- (2019.7월~8월) 민간위탁 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9.9월) 수탁기간 공개 모집
- (2019.9월~10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자문 및 수탁기관 선정
- (2019.11월) 위탁-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 운영
- (2021.10월) 정산 및 결과보고

□ 기타사항 (관련규정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2019. 3. 28., 제정]**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19. 3. 28. 개정]**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별첨 2】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21호, 2019. 3.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에서의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기관의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3】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

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

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첨 4】**

# 탈북학생 방학학교 성과보고서

1. 추진 개요

가. 운영 목적

-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탈북학생의 학습 의욕 및 학습 역량 강화
- 탈북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나. 운영 일정 : 여름방학 , 겨울방학 연간 2회 실시

다. 운영 장소 : 서울, 경기, 강원권 내 수련시설

라. 참여 인원 : 탈북학생 70명, 교사 70명, 자원봉사자 등

마. 사업내용

- 학생 위주의 일반적인 캠프와 달리 현직교원(멘토)과 탈북학생(멘티)을 1:1로 매칭 후 학습과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1:1 학습멘토링캠프\*로,
- \* 2018년 진로학습멘토링 겨울학교 : 탈북학생 73명, 현직교원 59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2명 참여
- 활동내용 중 50% 이상을 멘토와 멘티의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여, 탈북학생의 부족한 기초학습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

2. 최근 5년간 추진 실적

순	사업명	실시일(기간)	참가인원(명)	주요 사업 내용	운영 방법	예산액(천원)	비고
1	2014학년도 겨울방학학교	2015.1.13~1.16	220	탈북학생 학습지도, 진로지도 및 놀이문화체험	공모실시	55,000	특교
2	2015학년도 여름방학학교	2015.8.10~8.13	249	탈북학생 학습 지도, 진로지도 및 놀이문화체험	공모실시	55,500	특교
3	2015학년도 겨울방학진로캠프	2016.1.4~1.5	85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공모실시	15,000	특교
4	2016학년도 여름방학학교	2016.8.8~8.11	194	탈북학생 학습 지도, 진로지도 및 체험활동	공모실시	55,000	특교
5	2016학년도 겨울방학학교	2017.1.11~1.13	152	탈북학생 학습 지도, 진로지도 및 체험활동	공모실시	20,000	특교
6	2017학년도 여름방학학교	2017.8.7.~8.10.	153	탈북학생 학습지도, 체험활동	공모실시	55,000	특교
7	2017학년도 겨울방학학교	2018.1.8.~1.11.	181	탈북학생 학습지도, 진로지도 및 체험활동	공모실시	55,000	특교
8	2018학년도 여름방학학교	2018.8.6.~8.9.	132	탈북학생 학습지도, 체험활동	직접운영*	55,000	특교
9	2018학년도 겨울방학학교	2019.1.7.~2019.1.10.	138	탈북학생 학습지도, 진로지도 및 체험활동	직접운영	55,000	특교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시까지 직접 운영 하였으며,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지원 조례」 제정

### 3. 추진 성과

#### 가. 탈북학생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기초 학습 역량 강화 및 자기효능감 제고

- 탈북 과정에서 학습 결손 및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탈북학생의 기초 학력 부진을 1:1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 역량 강화
  - ※ 매 방학학교 당 70명 이상의 탈북학생이 방학학교 이수
-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캠프 활동으로 자아 존중감 형성 및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 나. 탈북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로 의식 제고

-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진로선택의 어려움 및 학부모의 진로지도 부재로 방학학교에서 진행되는 탈북학생 맞춤형 심층상담 및 진로체험활동이 필수적
- 탈북학생은 방학학교에서의 탈북학생 출신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 및 교원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선택 및 진학 정보 습득

#### 다. 현직교원의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탈북학생 지도교원 네트워크 형성

- 3박 4일 간 탈북학생과 활동을 통해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탈북학생 지도 경험이 많은 교원과 우수 지도사례 공유
  - ※ 2018년 탈북학생 겨울학교 참여교사 추후 방학학교 참석 의사 : 83%
- 학교 현장에 탈북학생에 대한 관심 및 지도방법을 전파하고 탈북학생 지도교원 간 네트워크 형성

### 4. 향후 계획

- 매년 2회 방학기간을 이용한 1:1 학습멘토링 방학학교 추진으로 탈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다양한 체활활동 제공 예정
- 방학학교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갖춰 탈북학생 지원의 효과성 향상